

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의무화에 관한 연구*

박 영 준**

<차례>

- | | |
|------------------------------------|------------------------|
| I. 서론 | IV. 가입 의무의 입법시 고려할 문제점 |
| II. 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의무화와
관련된 입법안 | V. 결론 |
| III. 가입 의무화의 필요성 | |

주제어: 개인정보유출, 사이버배상책임보험, 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 의무보험,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국문초록> 인터넷의 발달과 그 이용의 확대는 우리의 생활에 많은 편리를 가지고 왔지만 정보통신기술의 악용으로 대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자신의 개인정보가 침해된 피해자들은 피해액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고 소송절차가 번거로워 배상이 용이하지 않으며 그 배상액 또한 낮은 문제점이 있다. 반면 개인정보유출을 당한 기업체는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가 확정되어 있지 않아서 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측이 어려워 위험관리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미국 등에서는 “사이버 배상책임보험”(Cyber Liability Insurance: CLI)이 사용되고 있다. 사이버 배상책임보험은 e-비즈니스, 인터넷 네트워크 및 정보 자산 등 사이버 리스크와 관련하여 계약당사자의 위험과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위험을 모두 담보하는 보험으로, 기업에게는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고 피해자에게는 손해배상의 확실성을 담보해주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이 사이버 배상책임보험의 일종으로 몇몇 손해보험사에서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이라는 명칭으로 보험상품으로서 제공하여 왔으나 그 이용실적은 미미하였다.

지난 2011년 7월 SK커뮤니케이션즈가 운영하는 서버가 중국에 거주하는 해커에게 해킹

* 이 논문은 2014.12.1. 국회에서 열린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보유출배상책임제도 도입방안 정책토론회”에서 필자가 발표한 원고를 최근의 입법사항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한 것임.

**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법학박사

- 논문접수일(2015.5.12), 심사개시일(2015.6.5), 게재확정일(2015.6.20)

당하여 네이트 또는 싸이월드의 회원 3500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2012년에는 KT 한국통신의 전산시스템의 해킹으로 870만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되었다. 그리고 2014년 1월에는 KB국민, NH농협, 롯데카드 등 3개 신용카드사에서 1억 580만 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고를 계기로 사회전반에서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그 배상방법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최근에는 개인정보유출시의 배상에 관한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기 위한 법률개정안들이 국회에 의원입법으로 상정되어 왔다. 그 중 신용정보법은 2015년 3월 11일 개정되어 보험가입 의무화 규정(제43조의3)이 신설되었고 2015년 9월 12일부터 시행된다.

본고에서는 입법에 의한 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의무화가 과연 적절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만약 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할 경우 입법시 고려할 법적 쟁점에 관하여 각각의 쟁점별로 고찰하였다.

I. 서론

2011년 7월 SK커뮤니케이션즈가 운영하는 서버가 중국에 거주하는 해커에게 해킹당하여 네이트 또는 싸이월드의 회원 중 3495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아이디,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주소가 포함되어 있고, 가입 당시 혈액형, 닉네임 등을 입력한 일부 회원들의 경우 혈액형, 닉네임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대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된 회원들 중 일부는 SK커뮤니케이션즈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다수 제기하였다. 이 중 일부 하급심 판례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반면, 일부 하급심 판례는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¹⁾ 상반된 결론을 내렸고²⁾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³⁾

1) 개인정보유출 피해자 2,882명에게 1인당 2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2.15. 선고 2011가합11733 등 판결)

2) 관련판례에 대하여 자세한 것은 최호진,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유출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고찰 -SK컴즈 사건을 중심으로-”, 법조 63권 2호, 법조협회, 2014.2. 123~159면 참조

3) “해킹사고 당시 정보통신망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의 내용, 당시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정보보안의 기술 수준, 피고가 취하고 있던 전체적인 보안조치의 내용, 정보보안에 필요한 경제적 비용 및 그 효용의 정도, 해킹기술의 수준과 정보보안기술의 발전 정도에 따른 피해발생의 회피가능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수집한 개인정보의 내용과 개인정보의 누출로 인하여

2011년 11월 넥슨의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1320만여명의 개인 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되었다. 이는 전체 메이플스토리 회원의 약 3분의 2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사건이다. 이에 메이플스토리 운영 회사인 넥슨 측은 이를 사과하고,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이벤트를 열어 비밀번호를 변경한 회원들에게 2700원 세트 캐시 아이템을 교환할 수 있는 쿠폰을 지급했다.

2012년 KT한국통신은 전산시스템의 해킹으로 870만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되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해자 중 28,715명에 대해 1인당 10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⁴⁾ 이는 현재 KT한국통신의 항소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소송계속 중이다.

2014년 1월에는 KB국민, NH농협, 롯데카드 등 3개 신용카드사에서 1억 580만 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되었다.

같은 해 3월에는 KT 한국통신의 홈페이지가 해킹당하는 사건이 벌어지며 1200만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됐다.

이와 같이 인터넷의 발달과 그 이용의 확대는 생활에 많은 편리를 가지고 왔지만 정보통신기술의 악용으로 대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2001년 이후 국내 주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정리한 아래 <표 1>을 보면 개인정보가 유출된 기업은 통신사, 온라인게임회사, 온라인컨텐츠 제공업자 등 정보통신서비스업체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 일반 사업회사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모든 영역의 기업들에게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시간의 경과와 함께 유출규모가 점차 대규모화 되고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유출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다. 전세계적으로 매년 수천만에서 수억 건의 정보유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보유출건수와 유출된 정보수는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⁵⁾ 그리고 과거에는 금융기관, 정부 그리고

이용자가 입게 되는 피해의 정도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해킹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SK커뮤니케이션즈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하였음.(서울고등법원 2015.3.20. 선고 2013나20047 판결)

4) 법원은 "KT한국통신이 사내 통신망의 ID와 비밀번호, 사용자 계정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보고 "유출된 개인정보가 제3자인 정보유출자들에게 열람됐을 가능성이 높고, 추가 복제 및 2차 유출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개인정보의 확산 가능성이 남아있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8.22. 선고 2012가합81628 판결)

5) <http://www.datalosssdb.org> 참조

일반 대기업 등 개인정보를 다수 취급하는 기관기업이 해킹의 주요대상이었으니 최근 들어서는 항공우주, 전기, 가스 등의 업체에 대한 해킹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⁶⁾

<표 1> 2001년 이후 국내 주요 개인정보 유출 사고

사고사례		정보 유출 규모
2001년	SK텔레콤	관리소홀로 휴대전화 가입자 신상정보 유출
2002년	하나로통신	e메일 입력 실수로 3,000명의 신용카드 정보 등 유출
2007년	KT하나로텔레콤	고객 730만명의 개인정보가 위탁업체 등에 유출
2008년	옥션	해킹으로 고객 1,081만명 개인정보 유출
	GS칼텍스	고객 1,119만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컴퓨터용 디스크 유출
2009년	SK커뮤니케이션즈	해킹으로 싸이월드 미니홈피 방문자 200만명 정보 유출
2011년	현대캐피탈	해킹으로 고객 42만명 정보 유출
	SK커뮤니케이션즈	3,500만명의 주민등록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등 유출
	넥슨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1320만여명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
2012년	KT	고객 870만명 정보 유출
	진학정보사이트	고교 3학년생 68만명 정보 유출
2014년	KB국민, 농협, 롯데카드	1억 580만건 신용정보 유출
	KT	홈페이지 해킹으로 1,170만건 정보 유출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자신의 개인정보가 침해된 피해자들은 피해액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고 소송절차가 번거로워 배상이 용이하지 않고 그 배상액 또한 낮은 문제점이 있다. 반면 개인정보유출을 당한 기업체는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가 확정되어 있지 않아서 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측이 어려워 위험관리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미국 등에서는 “사이버 배상책임보험”(Cyber Liability Insurance: CLI)이 사용되고 있다. 사이버 배상책임보험(CLI)은 e-비즈니스, 인터넷 네트워크 및 정보 자산 등

6) 최창희·김혜란, “해의 사이버 배상책임보험시장 성장의 시사점,” *kiri Weekly* 제298호, 보험연구원, 2014.9.1. 4면 참조.

사이버 리스크와 관련하여 계약당사자의 위험과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위험을 모두 담보하는 보험으로서 뮌헨 재보험사는 이 시장이 2013년 현재 13억 달러 규모이며 7년 안에 50억 달러 이상의 규모로 성장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⁷⁾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도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이 사이버 배상책임보험(CLI)의 일종으로 몇몇 손해보험사에서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이라는 명칭으로 보험상품으로서 제공하여 왔으나 그 이용실적은 미미하였다.

그러나 2014년 1월, 3개 신용카드사의 고객정보 유출사건을 계기로 사회전반에서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그 배상방법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최근에는 개인정보유출시의 배상에 관한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기 위한 법률개정안들이 국회에 의원입법으로 상정되어 왔다. 이중 신용정보법은 2015년 3월 11일 개정되어 보험가입 의무화 규정(제43조의3)이 신설되었고 2015년 9월 12일부터 시행된다.

본고에서는 입법에 의한 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의무화가 과연 적절한 것인지, 그리고 가입 의무화시 고려할 법적 쟁점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II. 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의무화와 관련된 입법안

1. 개인정보 등의 보호에 관한 현행 법률체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다수의 법률에 의한 중첩적인 규제를 취하고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제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

7) 최창희·김혜란, 전제논문, 2면 참조

을 면할 수 없다(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제1항). 즉,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제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정보통신망법 제32조). 즉,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의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신용정보법)」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등”에 대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제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등과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가 법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신용정보회사등과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용정보법 제43조 제1항). 즉,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의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위와 같은 개인정보에 관한 규제를 도표로 표시하면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개인정보관련 법률의 적용대상⁸⁾

법명	분야	적용대상	대상 수	관할청
개인정보 보호법	총괄	모든 개인정보처리자	약 380만개 사업자	안전행정부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분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약 273만개 사업자 + 160만개 스마트폰 앱	방송통신위원회
신용정보법	금융신용분야	신용정보회사 등	약 7만개 사업자	금융위원회

8) 정종일,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 개인정보 제도변경 관련 설명회 발표자료, 손해보험협회, 2014.9.3. 8면 및 12면의 표를 이용하여 작성함.

(4) 사업자는 개별 개인정보의 분야에 따라 위와 같이 다양한 규제를 받는 것 이외에 사업자의 사업내용에 따른 규제를 추가적으로 받게 된다. 예컨대 금융회사가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규제를 추가적으로 받게 된다. 즉,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2. 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의무화 관련 법률개정안

위에서 언급한 여러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유출과 관련된 개인정보처리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명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가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해당 기업 등의 배상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제거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 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그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거나 금융회사에 자산을 예탁하게 함으로써 정보주체를 위한 피해보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법률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각 법률개정안의 실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4년 2월 14일에 박대동 의원을 대표로 발의되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현 행	개 정 안 (박대동 의원안)
<신 설>	<p>제39조의2(손해배상의 보장)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제3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거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기관에 자산을 예탁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 및 자산예탁의 기준, 절차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75조(과태료) ① (생략)</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p>제7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4.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 또는 자산의 위탁을 하지 아니한 자</p>
---	--

(2)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4년 2월 14일에 박대동 의원을 대표로 발의되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현행	개정안 (박대동 의원안)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p>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p>제32조의2(보험가입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거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호 내지 제8호의 기관에 자산을 위탁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 및 자산위탁의 기준, 절차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76조(과태료) ① ----- ----- -----.</p> <p>13. 제32조의2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 또는 자산의 위탁을 하지 아니한 자</p>

(3) 신용정보법

신용정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4년 2월 14일에 박대동 의원을 대표로 발의되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현 행	개 정 안 (박대동 의원안)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제52조(과태료) ① 제32조 제7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신원과 이용 목적을 확인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제43조의2(손해배상의 보장) ① 신용정보회사 등과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는 제43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거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호 내지 제8호의 기관에 자산을 예탁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 및 자산예탁의 기준,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5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2조 제7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신원과 이용 목적을 확인하지 아니한 자 2. 제43조의2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 또는 자산의 예탁을 하지 아니한 자

그러나 신용카드 3사의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발생하자 여러 국회의원들이 신용정보법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새롭게 발의되어 총 16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다. 이에 2014년 4월 30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2014년 5월 1일 아래와 같은 내용이 정무위원회안으로 제안되었다.

정무위원회안은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4항을 모델로 한 입법으로서, 기존 박대동 의원안과는 달리 과태료의 부과가 제외되었다.

현 행	개 정 안 (정무위원장 대안)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제43조의2(손해배상의 보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회사들은 제4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정무위원회안의 내용 그대로 2015년 3월 11일 신용정보법이 개정되었다. 다만 법률개정시에 신용정보회사 등이나 신용정보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되거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정손해배상의 청구가 동법 제43조의2로 신설되어서 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조항은 동법 제43조의3으로 조문번호가 바뀌어 신설되었다. 동법은 개정 후 6개월 후인 2015년 9월 12일부터 시행된다.

현 행 법	개 정 법 [시행 2015.9.12.]
<p><신 설></p>	<p>제43조의3(손해배상의 보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회사등은 제4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4) 전자금융거래법

참고로 전자금융거래법은 2006년 4월 28일 법제정시부터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여(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4항)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 등의 가입을 의무화 하고 있었다.

전자금융거래법에는 보험 등 가입의무 위반시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가 규정되어있지 않다.

제정당시	현행
<p>제9조(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④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제9조(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④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Ⅲ. 가입 의무화의 필요성

1. 사회·경제적 필요성

앞서 본바와 같은 정보유출사고의 빈번한 발생위험성과 정보유출시의 정보주체 및 개인정보처리자 등(정보유출기업)에 대한 심각한 경제적 위험성을 고려하여 불때 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을 법에 의하여 의무화하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정보주체, 개인정보처리자 등(정보유출기업) 그리고 보험회사 등 관련당사자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정보주체(피해자) 측면

정보주체의 측면에서 보면 개인정보처리자 등에게 맡겨놓은 본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손해를 입는 것은 물론이나 현실적으로 그 손해의 발생 및 손해배상액의 입증에는 대단한 어려움이 따른다. 이를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에서는 그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개인정보처리자 등이 위법사실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입증책임을 전환되었다 하더라도 정보를 유출한 개인정보처리자 등의 배상자력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피해를 보상받기 어렵게 된다. 실제로 최근 정보유출사고는 대규모로 행하여지는 경우가 많아서 사고 1건 별로 개인정

보처리자 등이 부담하는 배상책임액이 커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 등(정보유출기업)이 의무적으로 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경우 피해자인 정보주체의 측면에서는 자력있는 보험회사 등에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손해보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은 그 법적 성질이 “책임보험”이므로 보험사고의 발생시 피해자인 정보주체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보험회사에 대해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보다 원활한 손해보상이 가능해지는 이점 또한 있게 된다.

(2) 개인정보처리자 등(정보유출기업)의 측면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에서는 그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개인정보처리자 등이 위법사실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의 정보유출사고는 대규모로 행하여지는 경우가 많아서 사고 1건 별로 개인정보처리자 등이 부담하는 배상책임액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즉, 정보유출시 1인당 피해배상액은 소액일지라도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총 배상액은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2011년 7월 SK커뮤니케이션즈의 네이트 또는 싸이월드의 회원 중 3495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에 대하여 2013년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인당 20만원의 위자료료 2882명의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⁹⁾ 이 사건에서 만약 3495만명이나 되는 피해자 전부가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6조 99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배상금이 지급되게 된다.¹⁰⁾

참고로 <표3>에서 볼 수 있듯이 세계 주요국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당 평균비용은 2009년 기준 약 343만 달러로 중소기업에게는 경영에 타격을 줄 수 있을 정도의 고액이다.

9) 개인정보유출 피해자 2,882명에게 1인당 20만원의 위자료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음.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2.15. 선고 2011가합11733 등 판결)

10) 앞서보았듯이 이후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이러한 배상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음. (서울고등법원 2015.3.20. 선고 2013나20047 판결)

<표 3> 주요국 정보유출 사고당 평균비용¹¹⁾

[단위 : 달러]

국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평균
평균비용	675만	256만	344만	253만	183만	343만

최근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¹²⁾나 법정손해배상제의 도입¹³⁾이 개인정보 관련

11) 자료 : 보험연구원 2012.2 (원 자료 PGP/Ponemon, 2009)

12) 신용정보법은 2015.3.11.개정시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였다.

제43조(손해배상의 책임)

②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수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되거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어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그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의 재산상태
7.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의 개인신용정보 분실·도난·누출 후 해당 개인신용정보 회수 노력의 정도
8.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13) 정보통신망법은 2014.5.28.개정시에 이미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2014.11.29.부터 시행하고 있다. 신용정보법도 2015.3.11.개정시에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다.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된 경우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신용정보법 제43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신용정보주체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수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43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논의에서 쟁점화 되어 있고, 관련 규정이 2015년 3월 11일 신용정보법 개정시에 입법에 반영되었다. 따라서 향후 개인정보처리자 등이 부담하는 경제적인 위험은 보다 커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통한 위험의 분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3) 보험회사의 측면

위에서 본바와 같이 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통하여 정보주체는 자신이 받은 피해에 대한 확실한 보상이 가능하고, 개인정보처리자 등은 위험의 분산을 통하여 정보유출사고 발생시 경제적 위험을 피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만약 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에 이 보험을 가입하는 개인정보처리자 등은 대부분이 사고발생의 확률이 높은 자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보험회사로서는 정보유출가능성이 높은 소위 불량물건만 보험가입을 받도록 되어 있어 정상적인 위험률에 따른 보험료의 부과가 어렵게 될 것이다. 즉, 개인정보처리자 등의 위험의 역선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보험가입을 의무화하여 가능한한 보험집단의 크기를 키우는 것이 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의 위험률계산을 쉽게하고 실제 보험료를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법적 가능성(위헌여부의 평가)

우리 헌법에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헌법 제37조 제1항)고 되어있으므로 입

-
1.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개인신용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 ③ 제43조에 따른 청구를 한 자는 법원이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그 청구를 제1항에 따른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

법자의 판단에 따라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입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하여 여러 가지 의무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은 아래와 같다(보험업법 시행령 제80조 참조).

- 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책임보험계약
- ②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신체손해 배상특약부화재보험계약
- ③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3조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는 손해보험 계약
- ④ 「선원법」 제98조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는 손해보험계약
- 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는 손해보험계약
- ⑥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3조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는 손해보험계약
- ⑦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의3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는 손해보험계약
- ⑧ 「수상레저안전법」 제34조 및 제44조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는 손해보험계약
- ⑨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5조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는 손해보험계약
- ⑩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는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
- ⑪ 「항공운송사업 진흥법」 제7조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는 항공보험계약
- ⑫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는 손해보험계약
- ⑬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67조 제2항 및 별표 5 제9호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는 손해보험계약
- 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는 손해보험계약
- ⑮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는 손해보험계약

과거의 예를 보면 4층 이상의 건물을 특수건물로 규정하여 손해보험회사

가 영위하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강제가입하도록 규정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는 헌법재판소에서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경제질서와 과잉금지의 원칙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위헌으로 결정되었다.¹⁴⁾ 그렇지만 사실 이 경우에도 헌법재판소가 보험의 가입강제 자체를 위헌으로 본 것은 아니었다. 단지 “지나치게 과도한” 보험가입강제가 위헌이라는 것이었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의무화 규정을 입법할 때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을 참조하여 아래와 같은 점들을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 구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은 보험계약의 체결강제를 위하여 제23조에서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가입의무를 어기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였고 제7조는 이에 더 나아가 재무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가입의무자에 대한 인·허가의 취소, 영업의 정지, 건물사용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행정기관은 이 요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응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조항을 “보험가입 의무자인 특수건물소유자가 의무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그 직업선택의 자유와 재산권행사의 제한이 따르게 함으로써 기본적 생존, 인간다운 생활에 위협을 받게 하는 등 그 간접강제의 수단으로서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평가하였다. 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대해서는 “일종의 강제보험이지만 그 가입강제를 위하여 인·허가의 취소, 영업의 정지처분 등의 제재까지를 과하게 되어 있지는 않다”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의 경우에도 가입강제를 위해 사업자에 대한 인·허가의 취소, 영업의 정지처분 등의 제재를 규정해서는 곤란할 것으로 생각된다.

(2) 헌법재판소는 사보험에 대한 가입강제에 대하여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의 체결의 강제는 보험회사측에 영업상의 큰 특혜가

14) 헌법재판소 1991. 6. 3, 89헌마204 결정. 당시 이는 정책판단의 문제이지 헌법판단의 문제는 아니라고 한 소수의견도 있었다.

됨에 틀림없고 보험가입자에게는 그 의사에 반하는 계약체결의 강제로 경제적 부담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면서 “물론 강제보험의 경우에 반드시 공보험이 되어야 할 당위성은 없다 하여도 사보험으로 될 때에는 보험가입자를 위하여 국가 권력이 개입하여 영리회사인 보험회사를 견제하는 대응적 법적 조치가 있어야 공평을 기하는 것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공정한 계약이 되지 못하고 부합 계약이 되어 보험가입자의 재산권이 보장받기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생길 것이다”라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강제보험인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을 사보험으로 하면서 동법 제25조에서 재무부장관이 보험료 또는 보험약관에 관하여 인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다”고 하여 사보험에의 가입강제시 보험회사에 대한 국가권력에 의한 통제장치를 규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의 경우에도 금융위원회 등에서 보험료 또는 보험약관에 관하여 인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여 가입강제되는 사보험에 대한 국가의 통제방법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3) 헌법재판소는 구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이 “보험금액에 관하여 배상 책임보험의 경우에는 사망 500만원, 부상 400만원을 상한으로 한 부분보험임에 대하여, 화재보험의 경우에는 건물시가에 해당하는 금액 전액으로 하여 전부 보험으로 하고 있어서 대인배상책임에 대한 책임보험이라는 그 공공적인 주된 목적은 뒤쪽으로 물러나고 (물건보험인) 화재보험이 오히려 주된 자리를 차지하게 하였다”고 하면서 이는 “주된 입법목적을 이탈하여 배상책임보험은 뒷전으로 돌려 부수적인 것으로 하고 화재보험만을 완벽하게 한 본말전도의 체계부조화의 입법이라 아니 할 수 없다”라고 평가하면서 국민의 일반행동자유권 내지 경제활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하였다.

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은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과는 달리 자신의 이익을 위한 물건보험을 가입강제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적으로는 타인을 위한 보험을 가입강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국민의 일반행동자유권 내지 경제활동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에서는 비교적 자유롭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외국의 사례

(1) 미국

1) 현황

미국에서는 e-비즈니스, 인터넷 네트워크 및 정보 자산 등 사이버 리스크와 관련하여 계약당사자의 위험과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위험을 모두 담보하는 보험으로 “사이버 배상책임보험”(Cyber Liability Insurance: CLI)이 사용되고 있다.

미국은 세계 사이버 배상책임보험을 선도하고 있으며, 현재 약 40개 보험회사에서 관련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미국의 사이버 배상책임보험시장의 보험료규모는 2013년 약 13억 달러, 2014년 약 20억 달러로 추산되는데, 이는 전체 손해보험시장의 약 2%에 해당하는 규모이다.¹⁵⁾ 현재 전체 보험시장에서 차지하는 규모는 크지 않지만 2012년 대비 2013년에 가입보험료가 21%나 증가하였는데, 이 중 금융기관의 가입률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이버위험을 인식하기 시작한 중소기업의 가입률 역시 급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¹⁶⁾

2) 사이버 배상책임보험(CLI)의 특징

우리나라의 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은 정보유출로 인한 정보주체(피해자)의 손해배상에 보험의 중점이 있지만, 미국의 CLI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물론이고 정보유출로 인한 피보험자 자신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도 핵심적인 내용의 하나이다.¹⁷⁾ 또한 미국보험회사들은 CLI와 함께 사이버리스크 관리컨설팅을 제공하여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이를 신성장동력으로 활용함으로써, 현저한 매출 증대효과를 거두고 있다.¹⁸⁾

3) 보험가입의 의무화여부

미국은 사이버범죄를 막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가 일찍부터 도

15) Richard S. Betterley, “Cyber/Privacy insurance market survey-2014,” *The Betterley Report*, June 2014. p.6.

16) Richard S. Betterley, *op. cit.*, p.6.

17) 최창희·김혜란, 전계논문, 2면 참조

18) 최창희·김혜란, 전계논문, 2면.

입되었다. 특히 2002년 캘리포니아에서 정보유출통지법(The California Data Security Breach Notification Law)이 제정되고 2003년 처음 시행된 이후, 현재 미국 47개주에 도입되어 개인정보유출사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다. 또한 최근 확산되는 사이버범죄로 인한 피해보상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 집단소송(Class Action)이 발달하여 기업이 막대한 배상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 등이 CLI 가입을 촉진시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급증하는 사이버위협과 이로 인한 비용증가에 따라¹⁹⁾ 사이버 배상책임보험(CLI)의 가입의무화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있다. 이에 따르면 과거 자동차의 발명과 확대에 의한 사회문제를 자동차보험의 의무가입으로 상당부분 해소했던 것처럼 사이버 위협에 관한 것도 사이버 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한다.²⁰⁾ 사이버 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의무화는 기업들의 사이버위협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안전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하는 견해도 있다.²¹⁾

그러나, 사이버범죄의 위협급증 및 사이버 배상책임보험의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기업의 사이버 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은 약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현재까지 미국의 법제에서 사이버 배상책임보험(CLI)은 의무가입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2) 유럽

유럽은 1995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EU 정보보호 지침(European Data Protection Directive)」이 제정되고, 이에 따라 각국이 개인정보보호관련법률을 재정비하면서 개인정보관련 보험상품의 판매가 본격화되었다.

최근 유럽은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네트워크정보보안전문기관인 ENISA(Europe Network and Information Security Agency)

19) 미국의 경우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비용이 건당 188달러에 이른다.

20) Mark Campbell, "Mandatory Cyber Insurance - Driving Improved Security or Just Passing the Buck?," March 17, 2014. (<http://www.ciphercloud.com/2014/03/17/mandatory-cyber-insurance-driving-improved-security-just-passing-buck>)

21) Jonathan Weicher, "In Light of Breaches, Mandatory Cyber Liability Insurance?," April 10, 2014. (<http://www.netlib.com/blog/application-security/In-Light-of-Breaches-Mandatory-Cyber-Liability-Insurance.asp>)

를 출범시키는 등 범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ENISA는 유럽에서 개인 정보관련 보험시장의 확대를 위한 정부조치의 하나로 사이버보험(Cyber Insurance)의 의무화를 언급한 바 있다.²²⁾

한편, 유럽연합(EU)은 2012년 개인정보침해사실의 통지의무를 법제화한 「e-프라이버시 지침」을 개정하여 2013년부터 각 회원국에서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글로벌 보험회사들은 향후 소매업·의료·금융서비스 등 개인정보를 활용해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유럽의 개인정보 관련보험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²³⁾

(3) 일본

일본은 미국의 사이버 배상책임보험(CLI)과 유사한 형태의 e-리스크 보험을 2000년 1월부터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2003년 4월 개인정보유출고지법이 제정되자 이에 발맞춰 기업들의 리스크를 보장할 수 있는 개인정보유출보험을 개발하여 2005년부터 판매하였다. 일본의 개인정보유출보험은 일본상공회의소의 회원을 대상으로 미쯔이·스미토모를 간사회사로 하여 13개 손해보험사가 공동 인수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²⁴⁾ 개인정보유출보험은 가입 기업의 업종, 매출액 등에 따라 사이버보험료를 산출하고 있으며, 가입 기업 수에 따른 단체할인, 가입 기업의 개인정보관리 상황에 따른 할인을 적용하고 있다.²⁵⁾

아직까지 일본에서 개인정보유출보험의 의무가입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4. 소결

아직까지 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과 같은 개인정보 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을 의

22) 보험개발원, “개인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의 활성화 방안”, 「CEO Report」, 2012.12, 18면.

23) 보험개발원, 전개논문, 18면.

24) 보험연구원 산업연구실, “개인정보 유출리스크 증대에 따른 안전망 구축 필요성”, 보험연구원 주간 이슈, 2010.12.13.

25) 김소연·차윤주·김창기·최양호, “국내 사이버위험과 사이버보험에 관한 연구”, 보험학회 2014 하계학술대회 발표자료, 2014, 8면.

무화하고 있는 국가는 없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유출을 포함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은 점점 더 증진되고 있다. 때문에 헌법상 경제활동의 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을 의무화 하는 것은 개인정보유출시의 정보주체(피해자)와 개인정보처리자 등(기업) 모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IV. 가입 의무의 입법시 고려할 문제점

1. 의무가입자의 범위

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을 의무화 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및 신용정보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기업의 모두에게 가입을 의무화할 것인가? 헌법재판소의 판단²⁶⁾에 비추어보면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 의 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경제질서와 과잉금지의 원칙에 합치되는 한도”에서의 가입 의무화를 규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미 보험 등의 가입의무화를 규정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4항에서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금융거래감독 규정 제5조²⁷⁾에서는 기업 규모에 따른 가입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26) 헌법재판소 1991. 6. 3, 89헌마204 결정.

27) 전자금융거래감독규정 제5조(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을 위한 보험 등의 가입에 관한 기준)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보상한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3.12.3>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다만, 「은행법」에 의한 지방금융회사 및 같은 법 제58조에 의해 인가를 받은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은 제외한다) 및 제7호의 회사,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조제2호의 회사 : 20억원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8호의 회사,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나목(신용카드업자에 한한다) 및 다목의 회사,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회사, 「은행법」에 따른 지방금융회사 및 같은 법 제58조에 의해 인가를 받은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 : 10억원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호(다만, 명의개서대행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는 제외)의 회사 : 5억원

이러한 면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및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보험 가입 및 자산예탁의 기준, 절차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시행령에서의 적절한 가입기준의 제시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2. 보상범위의 제한

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을 의무화 하는 경우 그 보험의 보상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및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각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²⁸⁾ 이 경우 각 법률에서 규정한 의무의 범위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개인정보처리자 등이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경우의 수도 상당히 광범위한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의무가입해야 하는 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의 보상범위를 각 법이 규정하는 핵심적인 범위에 제한 할 수 있도록 향후 시행령에서의 적절한 규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 보상한도의 제한

개인정보유출 사고의 경우는 한 번의 사고로도 대량의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가 많고, 1인당 피해액은 소액에 불과하더라도 총 배상액의 규모는 다액인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 이외의 금융회사 : 1억원. 다만, 제1호부터 제3호 이외의 금융회사들이 관련 법령에 의해 당해 금융회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금융회사를 통해 전자금융거래 관련 정보기술부문의 주요부분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 정보기술부문의 주요부분을 제공하는 금융회사가 공동 이용 금융회사 전체의 사고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제2호의 금액(시행령 제2조제5호의 금융회사는 제1호의 금액) 이상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면 공동 이용 금융회사는 본호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5. 법 제2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전자금융업자 : 2억원

6. 제5호 이외의 전자금융업자 : 1억원

28) 신용정보법 제43조 - “신용정보회사가 이 법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정보주체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32조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힌 경우”

가 많이 있다. 때문에 보상한도의 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 보험료 부담이 너무 커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의 기준으로 제시하는 “지나치게 과도한” 보험가입강제가 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을 의무화 하는 경우 의무 가입해야하는 보상한도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보상한도의 제한에 있어서는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처럼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보상금액의 상한을 정하는 방식, (2)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전자금융거래감독규정 제5조처럼 의무가입할 보상금액의 하한을 정하는 방식 2가지 모두 검토 가능할 것이다.

4. 면책사유의 문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및 신용정보법 등에 따를 때 개인정보처리자 등의 고의에 의한 위법행위로 인한 정보주체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의 보상범위에 고의에 의한 사고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기존의 의무가입보험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대인배상은 고의에 대해서도 보상하고 있지만,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보험가입의 경우에는 유조선 선박소유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 등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16조 제1항). 즉 의무가입 보험의 경우 고의를 면책으로 할 것인가는 입법자의 재량으로 맡겨져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생각건대 현재 보험계약법상 고의사고는 면책이 일반적인 점(상법 제659조), 현재 임의보험으로 운영 중인 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에서도 고의를 면책으로 하고 있는 점, 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의 보험사고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대인 사망사고와 비교할 때에는 그 피해의 정도가 약할 것으로 생각되는 점, 보험이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를 없애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고의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면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5. 가입강제방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및 신용정보법 개정초안은 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을 강제하기 위하여 “미가입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 수단을 규정하고 있다.²⁹⁾

보험가입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제재 수단 불비시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이행한 자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정보주체 보호라는 제도의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어서 미가입자에 대한 제재 도입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다만, 우리 헌법재판소는 구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서 보험계약의 체결강제를 위하여 제23조에서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가입의무를 어기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였고, 제7조는 이에 더 나아가 재무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가입의무자에 대한 인·허가의 취소, 영업의 정지, 건물사용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행정기관은 이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응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이러한 조항을 “보험가입 의무자인 특수건물소유자가 의무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그 직업선택의 자유와 재산권행사의 제한이 따르게 함으로써 기본적 생존, 인간다운 생활에 위협을 받게 하는 등 그 간접강제의 수단으로서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평가하였다.³⁰⁾ 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대해서는 “일종의 강제보험이지만 그 가입강제를 위하여 인·허가의 취소, 영업의 정지처분 등의 제재까지를 과하게 되어 있지는 않다”고 평가하였다.

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을 강제하기 위하여 미가입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재판소 판결에 비추어 보았을 경우 지나치게 가혹한 제재수단으로는 생각되지 아니한다. 다만 과태료 액수 “3천만원”이 적절한 것인가는 입법적인 판단을 필요로 한다고 보인다.

29) 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을 규정한 전자금융거래법과 2015년 개정 신용정보법은 모두 가입강제방안의 하나로써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입법하지 아니했다.

30) 헌법재판소 1991. 6. 3, 89헌마204 결정. 당시 이는 정책판단의 문제이지 헌법판단의 문제는 아니라고 한 소수의견도 있었다.

6. 복수의 법률에 의한 보험가입 의무의 중복문제

개정 신용정보법에 추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라 해당 법률이 개정되어 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의무가 부과되는 경우 3개 법률의 적용범위가 중첩되기 때문에 1개 사업자가 각각의 법률에 의하여 보험가입의무가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예컨대 어떠한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에 의하여 별도의 2건의 보험가입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법이론적으로는 개별 법령은 각각 그 규율대상이 상이하기 때문에 각각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유사한 보험 상품에 중복하여 가입하는 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향후 의무보험관련 보험상품을 만들 때에 개별 법률에서 보호하는 부분이 중복되는 것을 기본약관으로 하고 개별 법률이 특별히 규율하는 부분은 특별약관으로 하여 하나의 보험계약으로 포괄적으로 보험보상이 가능하도록 보험상품을 설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V. 결론

이상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및 신용정보법에 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에의 가입 의무조항을 신설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가입의무조항의 신설시에 유념해야할 관련 법률문제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을 의무 가입하도록 요구하는 외국의 법제는 아직 없으나 현재 미국, 유럽 등에서 관련 논의가 활발하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관련 사건의 발생이 자주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다른 나라보다 앞서서 의무가입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한다.

현실적으로 정보유출사고 발생시 손해배상액의 확정이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액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법정손해배상제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고 실제로 관련 규정이 2015년 3월 신용정보법 개정시에 입법에 반영되었

다. 그런데 법정손해배상제의 도입이 되어도 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에 의한 피해자의 구제가 따르지 않는다면 “신속한 피해자의 구제”는 쉽지 않다. 따라서 향후 정보유출과 관련한 법률들은 법정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정보유출 피해자의 보다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입법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된다.³¹⁾

다만, 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한다면 이러한 제도의 도입시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문제점을 살펴서 개별 법률의 시행령상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제가 관련 산업분야에 대한 새로운 과잉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입법상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31) 2015년 개정 신용정보법은 이러한 측면을 어느 정도 잘 살린 개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소연·차윤주·김창기·최양호, “국내 사이버위험과 사이버보험에 관한 연구”, 보험학회 2014년 하계학술대회 발표자료, 2014.
- 김은경, “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소고”, 「금융법연구」 11권 3호 한국금융법학회, 2014
- 정종일,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 개인정보 제도변경 관련 설명회 발표자료, 손해보험협회, 2014.9.3.
- 최창희·김혜란, “해외 사이버 배상책임보험시장 성장의 시사점,” 「kiri Weekly」 제298호, 보험연구원, 2014.9.1.
- 최호진,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유출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고찰 -SK컴즈 사건을 중심으로”, 「법조」 63권 2호 (통권 689호), 법조협회, 2014.2
- 보험개발원, “개인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의 활성화 방안”, 「CEO Report」, 2012.12
- 보험연구원 산업연구실, “개인정보 유출리스크 증대에 따른 안전망 구축 필요성”, 「보험연구원 주간이슈」, 2010.12.13.
- Richard S. Betterley, “Cyber/Privacy insurance market survey-2014,” The Betterley Report, June 2014.
- Mark Campbell, “Mandatory Cyber Insurance - Driving Improved Security or Just Passing the Buck?,” March 17, 2014. (<http://www.ciphercloud.com/2014/03/17/mandatory-cyber-insurance-driving-improved-security-just-passing-buck>)
- Jonathan Weicher, “In Light of Breaches, Mandatory Cyber Liability Insurance?,” April 10, 2014. (<http://www.netlib.com/blog/application-security/In-Light-of-Breaches-Mandatory-Cyber-Liability-Insurance.asp>)

<Abstract>

A Study on Mandatory Cyber Liability Insurance

Young Joon Park

Development and advancement of internet technology offering more convenience in our lives, but the personal information could be leaked in the course of using it and the using process itself is exposed to the risk of hacking. When private information leakage incident has occurred, it is very difficult that victims prove their damages. On the other hand, company have trouble to managing their risks related to information leak.

Cyber Liability Insurance(CLI) is one of the most useful method that help companies managing information leak risk. Cyber liability insurance cover companies' liability to third-party damages which caused leakage of the private information. Cyber liability insurance is very popular in America, but in Korea, it's not.

In July 2011, two popular web sites, Nate and Cyworld operated by SK Communications were hacked by a Chinese hacker, causing the private information of 35 million users to be leaked. In 2012, KT Communications' data server were hacked by an hacker, causing the private information of 8.7 million users to be leaked. And, in Jan 2014, three major credit card companies (KB card, NH card, Lotte card) leaked 105 million of their customer's private information.

In the wake of such accidents, several legislative bills which contain mandatory cyber liability insurance were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such as the revis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 revision of the Information & Communications Network Act, and the revision of the Credit Information Act. Especially, in March 11, 2015,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the revision of the Credit Information Act which contains mandatory

cyber liability insurance(Art. 43-3). It is enforced from Sep. 12, 2015.

In this article, the author insist on mandatory cyber liability insurance would be helpful for both of the information company and their consumers. And the author suggest adopting mandatory cyber liability insurance in the near future o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the Information & Communications Network Act.

Key Words : leakage of the private information, cyber liability insurance, compulsory insuranc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Credit Information Act